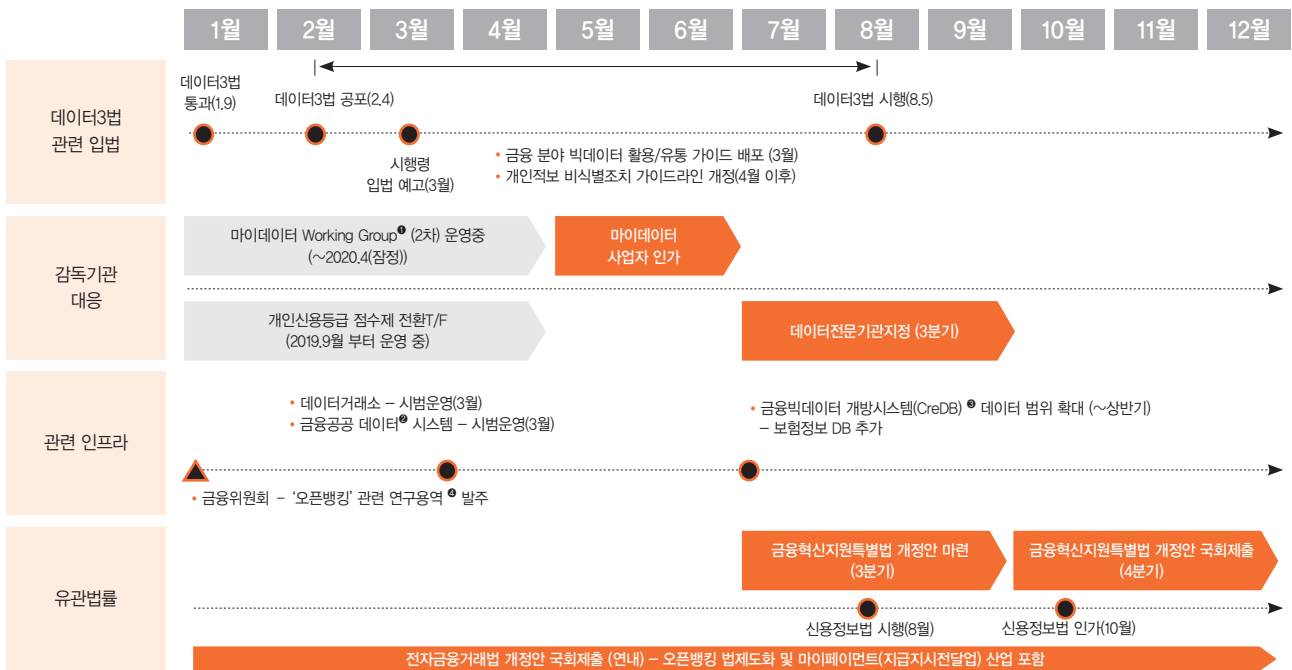


데이터 3법 관련 2020년 주요 일정



①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1차 논의 주제 : 데이터 범위, 과금체계, API표준규격, 인증방법 등
 ② 금융공공 데이터 참여기관 :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 공공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③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 개인신용, 기업신용 DB 서비스중(2019.6~)
 ④ 연구용역 주요 내용 : 오픈뱅킹 개선 방안(제2금융권 확대, 오픈뱅킹 API 확대,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연계 방안 등)

지난 2월 20일 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8월 법 시행 이전에 진행되어야 할 많은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하위 법령은 시행령은 3월에 입법 예고가 계획되어 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3월 중에 배포될 예정에 있다.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은 4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지만 행안부 가이드라인 일정과 맞추어 제공될 예정이기에 실제로는 5~6월이나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대한 해설집은 5~6월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인가 신청에 대한 가이드는 4월 제공 예정이며, 5월에 인가 신청 여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예비인가, 본인가 구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가에 있어 업종의 제한은 없으나 신청한 모든 기업이 인가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 기업 수를 사전에 정해 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PFM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받고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법 시행 1년 후인 2021년 8월 이후에는 기존 PFM 서비스 업체는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고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한 해는 데이터 3법에 대한 변화를 준비해 나가는 매우 바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